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규정

제 2.1 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¹⁾에 적용된다.

제 2.3 조 관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²⁾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
- 1)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품을 의미한다.
 - 2) 양 당사자는 이 정의가 양 당사자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5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세율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이다.

3.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이하 “최혜국”이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제 2.6 조 동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한정된다.

-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게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세율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의 규격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연도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10 조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와 제2.3조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2.11 조

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도 유지하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2.12 조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와 선택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3 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 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 2.14 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규정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4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제 2.15 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 조 및 그 주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자호 및 차호에 규정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게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정보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규정

제 2.16 조

상품무역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절한 경우 그러한 문제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련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 2.17 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관세 대우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세 및 관련 문제에서

부정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2.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부정 또는 사기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관세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합한다.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 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